CHILDCARE SERVICE

# 2014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가이드 라인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가이드 라인

CHILDCARE SERVICE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가이드 라인

CHILDCARE SERVICE

CONTENTS

# 목차


01 특별활동이란? 06

02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하세요 10

03 특별활동비, 투명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15

04 특별활동 운영현황,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주세요 26

05 행정제재를 받지않도록 주의하세요 32

부록 특별활동 표준운영안 37

영유아보육법상 관련규정 39

Chapter.1

# 특별활동이란?

CHILDCARE
SERVICE

## 특별활동이란?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존에는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등의 용어도 사용하였으나,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 과도한 특별활동 참여는 영유아의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또한 영어, 수학, 한글 등 학습 위주의 활동보다는 음악, 체육, 미술, 통합활동 등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잠깐!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특별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 특별활동 참여 여부 : 어린이집 재원아동 중 **69%**가 특별활동 참여

| | 영아 | 유아 | 전체 |
|---|---|---|---|
| '13년 | 51.9% | 90.0% | 69.0% |

- 특별활동 참여시 이용 개수 : 평균 **2.9**개 이용(영아 2.7개, 유아 3.1개)

(단위 : %, 개)

| 구분 |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 소계 | 평균(개) |
|---|---|---|---|---|---|---|---|---|
| '13년 | 계 | 8.2 | 16.8 | 23.4 | 16.8 | 13.5 | 69.0% | 2.9개 |
| | 영아 | 7.8 | 15.2 | 17.6 | 8.1 | 3.2 | 51.9 | 2.7 |
| | 유아 | 8.7 | 18.8 | 30.5 | 20.3 | 11.8 | 90.0 | 3.1 |

- 과목별 참여 비율 : 영어, 체육, 음악, 미술 순으로 많이 참여

(단위 : %)

| 구분 | | 영어 | 체육 | 음악 | 미술 | 교구 | 과학 | 한글 | 통합 | 기타 |
|---|---|---|---|---|---|---|---|---|---|---|
| '13년 | 계 | 79.3 | 67.4 | 51.6 | 30.3 | 28.1 | 9.3 | 7.0 | 6.1 | 5.9 |
| | 영아 | 64.5 | 64.5 | 56.3 | 26.8 | 31.0 | 3.1 | 6.7 | 8.6 | 3.9 |
| | 유아 | 89.9 | 69.5 | 48.3 | 32.8 | 26.0 | 13.7 | 7.2 | 4.3 | 7.3 |

* (예시) 영어 79.3 :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아동 중 79.3%가 영어에 참여한다는 의미.
중복응답이 허용되는 문항으로 각 과목의 합은 100%를 초과함

- 비용 및 부담정도 : 평균 **5만3천원** 지불, **45.7%**가 부담된다고 응답

| 비용 지불현황 | 3만원 미만 | 3~5만원 | 5~7만원 | 7~10만원 | 10만원이상 | 평균 |
|---|---|---|---|---|---|---|
| '13년 | 9.8% | 21.6% | 20.4% | 14.0% | 3.1% | 53,000원 |

| 비용 부담정도 | 전혀부담안됨 | 별로부담안됨 | 적당 | 조금부담 | 매우부담 |
|---|---|---|---|---|---|
| '13년 | 1.7% | 22.1% | 30.5% | 39.8% | 5.9% |

* 출처 :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연구(2013, 육아정책연구소)

Chapter.2

#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하세요

CHILDCARE
SERVICE

## 01 특별활동 참여는 의무인가요?

X

특별활동은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에 한하여 진행되는 선택 과정입니다.

특별활동 실시 전 아동의 보호자에게 특별활동에 대한 내용, 운영시간, 비용 등을 반드시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4페이지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참고

## 02 모든 영유아가 아동 연령에 관계없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X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03 특별활동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O** 특별활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04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어떻게 보육해야 하나요?

특별활동은 선택과정이므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05 특별활동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각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활동 운영 계획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에서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 37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 표준운영안 참고

### 궁금해요

**Q** 특별활동 강사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이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A** 특별활동 강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건강검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보건소의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참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00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29조제4항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요청)를 받아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실 보호자께서는 참여 여부를 해당 란에 표시하고 동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활동프로그램 | | | | | | 참여 여부 |
|---|---|---|---|---|---|---|
| 명칭 | 내용 | 실시 횟수 (주·월) | 요일 | 운영시간 | 비용(원) | |
| | | 회 | | - | | |
| | | 회 | | - | | |
| | | 회 | | - | | |
| | | 회 | | - | | |

영유아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동의(요청)자(보호자) 성명 : (서명)

년 월 일

**유의사항**

1. 위 동의(요청)서의 특별활동프로그램란은 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적습니다.
2.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란에 'O' 표를 합니다.



Chapter.3

# 특별활동비, 투명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01 특별활동비 수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지자체는 매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운영 시 해당 지자체 한도액 내에서 자체 수납액을 정하고, 동 금액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 한도액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비용도 포함됩니다.

- 특별활동 수납액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상한액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 여기서 잠깐!

각 어린이집이 수납하는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활동 수납액이 정보공시에 공개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어린이집과 보호자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가 변동될 경우 정보공시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 정보공시 부적정 사례

- 보육비용 항목에서 특별활동비 수납액은 3만원으로 공시

**기타필요경비**

| 항목 | 세부항목 | 결제주기 | 어린이집 수납액 |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연단위 | 0원 |
| 입학준비금 | 피복류구입비 | 연단위 | 93,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비 | 월단위 | 30,000원 |

- 보육현황·과정 항목의 특별활동내역에서는 과정당 15만원으로 공시

**특별활동**

| 순번 | 과목명 | 대상연령 | 주당운영시간 | 특별활동비(월단위) | 업체명 |
|---|---|---|---|---|---|
| 1 | [redacted] | 만2세 | 40 분 | 150,000원 | [redacted] |
| 2 | [redacted] | 만2세 | 40 분 | 150,000원 | [redacted] |

〈참고〉 2014년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시도 | 시군구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시군구 | 국공립 | 민간 · 가정 |
|---|---|---|---|---|---|---|
| 서울 (25개시군구) | 종로구 | 115,000 | 좌동 | 마포구 | 70,000 | 100,000 |
| | 중구 | 100,000 | 좌동 | 양천구 | 150,000 | 좌동 |
| | 용산구 | 120,000 | 140,000 | 강서구 | 120,000 | 좌동 |
| | 성동구 | 50,000 | 100,000 | 구로구 | 70,000 | 100,000 |
| | 광진구 | 80,000 | 140,000 | 금천구 | 73,000 | 94,000 |
| | 동대문구 | 120,000 | 좌동 | 영등포구 | 140,000 | 좌동 |
| | 중랑구 | 80,000 | 좌동 | 동작구 | 120,000 | 좌동 |
| | 성북구 | 70,000 | 100,000 | 관악구 | 90,000 | 120,000 |
| | 강북구 | 150,000 | 좌동 | 서초구 | 170,000 | 좌동 |
| | 도봉구 | 70,000 | 100,000 | 강남구 | 100,000 | 190,000 |
| | 노원구 | 80,000 | 90,000 | 송파구 | 70,000 | 150,000 |
| | 은평구 | 70,000 | 100,000 | 강동구 | 50,000 | 140,000 |
| | 서대문구 | 60,000 | 100,000 | | | |
| 경기 (31개 시군구) *국공립, 민간가정 동일 | 수원시 | 60,000 | | 의왕시 | 75,000 | |
| | 성남시 | 68,000 | | 오산시 | 66,000 | |
| | 부천시 | 60,000 | | 여주군 | 70,000 | |
| | 안양시 | 70,000 | | 양평군 | 70,000 | |
| | 안산시 | 70,000 | | 과천시 | 60,000 | |
| | 용인시 | 68,000 | | 고양시 | 70,000 | |
| | 평택시 | 50,000 | | 남양주시 | 80,000 | |
| | 광명시 | 70,000 | | 의정부시 | 59,000 | |
| | 시흥시 | 65,000 | | 파주시 | 70,000 | |
| | 군포시 | 70,000 | | 구리시 | 80,000 | |
| | 화성시 | 75,000 | | 양주시 | 65,000 | |
| | 이천시 | 60,000 | | 포천시 | 70,000 | |
| | 김포시 | 60,000 | | 동두천시 | 70,000 | |
| | 광주시 | 80,000 | | 가평군 | 60,000 | |
| | 안성시 | 60,000 | | 연천군 | 60,000 | |
| | 하남시 | 80,000 | | | | |

| 시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시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
| 부산 | 70,000 | 80,000 | 충북 | 80,000 | 90,000 |
| 대구 | 60,000 | 70,000 | 충남 | 90,000 | 좌동 |
| 인천 | 40,000 | 45,000 | 전북 | 90,000(시) | 좌동 |
| 광주 | 60,000 | 좌동 | | 80,000(군) | 좌동 |
| 대전 | 50,000 | 90,000 | 전남 | 70,000 | 80,000 |
| 울산 | 85,000 | 좌동 | 경북 | 70,000 | 좌동 |
| 세종시 | 80,000 | 좌동 | 경남 | 60,000 | 55,000 |
| 강원 | 70,000 | 좌동 | 제주 | 60,000 | 좌동 |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15년 이후 자료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수납해야 하나요?

- 특별활동비는 아이사랑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방법은 하단 참고)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은 통장을 통해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현금수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명의로 어린이집 운영 통장에 다시 입금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아이사랑카드로 기타 필요경비 결제하는 방법

- 보육료와 같이 어린이집 방문 또는 ARS,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사랑카드로 기타 필요경비 결제시 수수료는 어린이집이 부담하게 됩니다. (월 5만원 결제시 약 5원의 수수료 발생, 결제금액의 0.01%)

-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경비수납액관리] 미등록시 아이사랑카드로 기타 필요경비를 결제할 수 없으므로 [기타경비수납액관리]를 사전에 등록해주세요!

## 여기서 잠깐 ! ①

-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회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 원장, 대표자,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거나 보호자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②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 필요경비 수납 시에는 보호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 금액을 꼭 안내해주세요.

〈예시〉 '14. 9월 필요경비 청구내역

| | |
|---|---|
| 특별활동비 00원 | 행사비 00원 |
| 현장학습비 00원 | 아침·저녁급식비 00원 |
| 차량운행비 00원 | 시도특성화비용 00원 |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성)

# 03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세입, 세출 모두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참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과목 | | | | | | 내 역 |
|---|---|---|---|---|---|---|
| 관 | | 항 | | 목 | | |
| 01 | 필요경비 수입 | 11 | 필요경비 수입 | 111 | 기타 필요경비 |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
| | | | | **112** | **특별활동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목 | | | | | | 내 역 |
|---|---|---|---|---|---|---|
| 관 | | 항 | | 목 | | |
| 200 | 사업비 | 210 | 사업 운영비 | 211 | 급간식비 |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
| | | | | 212 |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
| | | | | 213 | 행사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
| | | | | 214 | 기타필요경비 지출 |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
| | | | | **215** | **특별활동비 지출** |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

##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거나, 보호자에게 수납한 특별활동비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특별활동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은 특별활동비 지출과목이 아닌, 해당 계정과목에 기장하시면 됩니다.

**예시**

- 교재교구비 → "(200)사업비–(210)사업운영비–(212)교재교구비"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비 → "(100)어린이집 운영비–(130)관리운영비–(132)수용비"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 04 특별활동비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특별활동비는 실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실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수납액의 14%이내에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특별활동 업체 선정이나 수업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잔액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 정산은 언제, 어떻게?

특별활동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정산도 필요경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반기마다 필요경비 항목별 총 수납액, 총 지출액, 잔액 등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비도 반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Chapter.4

# 특별활동 운영현황,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주세요

CHILDCARE
SERVICE

## 01 특별활동 운영현황도 정보공시 대상인가요?

**O** '13년말부터 시행된 정보공시 대상에는 특별활동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과목명, 과목당 대상 연령 및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공시 화면에서 보육현황·과정의 특별활동 세부내역과 보육비용의 어린이집 수납액이 일치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참고. 정보공시 입력방법

- '보육현황 · 과정' 화면의 특별활동

**• 수정방법**

정보공시 ▸ 정보공시관리 ▸ 보육현황·과정–특별활동 ▸ 수정 후 저장

**• 공시 횟수 및 주기**

월 1회, 매월 (전월 마지막 주 갱신)

## 입력 항목별 설명

- **미실시** : 특별활동 미실시인 경우 체크 후 저장
- **과목명** : 입력박스에 커서를 위치하고 과목명을 직접 입력
- **대상연령** : 과목에 해당하는 연령을 선택박스에서 선택
- **주당운영시간** : 입력박스에 커서를 위치하고 주당운영시간을 분단위 숫자로 입력
- **특별활동비** : 입력박스에 커서를 위치하고 원단위 숫자로 금액 입력
  – 특별활동비 금액입력시 개별과목당 영유아 1인당 수납 받는 월간 비용을 등록
- **업체명** : 입력박스에 커서를 위치하고 업체명을 입력
- **비고** : [추가]버튼 ▸ 아래에 신규항목 등록을 위한 행 생성, [삭제] 버튼 ▸ 현재 행 삭제
- **저장** : 특별활동 입력한 내역을 저장

※ 동일과목을 연령별로 운영할 경우는 각 연령별로 별도 입력 필요
예시) 영어 과목 4, 5세 실시할 경우 2건 입력

## 참고. 정보공시 입력방법

- '보육비용' 화면의 기타필요경비 부분

**• 수정방법**

정보공시 ▸ 정보공시관리 ▸ 보육현황·과정-특별활동 ▸ 수정 후 저장

**• 공시 횟수 및 주기**

수시 *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필요경비

| 항목 | 세부항목 | 결제주기 | ①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연단위 | 5,000 원 |
| 입학준비금 | 피복류구입비 | 연단위 | 95,000 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비 | 월단위 | 70,000 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 분기 | 135,000 원 |
| 기타비용 | 차량운행비 | 월단위 | 18,000 원 |
| 기타비용 | 행사비 | 연단위 | 240,000 원 |
| 기타비용 | 아침,저녁급식비 | 월단위 | 108,000 원 |
| 기타비용 | 교재교구비 | 월단위 | 50,000 원 |

※ 직접수정이 가능한 항목이며, 저장 버튼 클릭시 즉시 반영됩니다.
※ 수납 한도액 이내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적을 수도 있음.

② 저장

※ 주의사항 : 수납하지 않는 항목은 '0'으로 처리합니다. 해당지역 한도액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입력 항목별 설명

-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 어린이집에서 책정한 수납 한도액을 수납액 입력박스에 원단위로 금액 입력
  ※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시군구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저장** : 기타필요경비 입력한 내역을 저장
  ※ 특별활동비 : 어린이집에서 수납한 금액이므로 보육과정 공시 항목의 과목별 특별활동 비용과는 상이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과 저녁의 급식비를 모두 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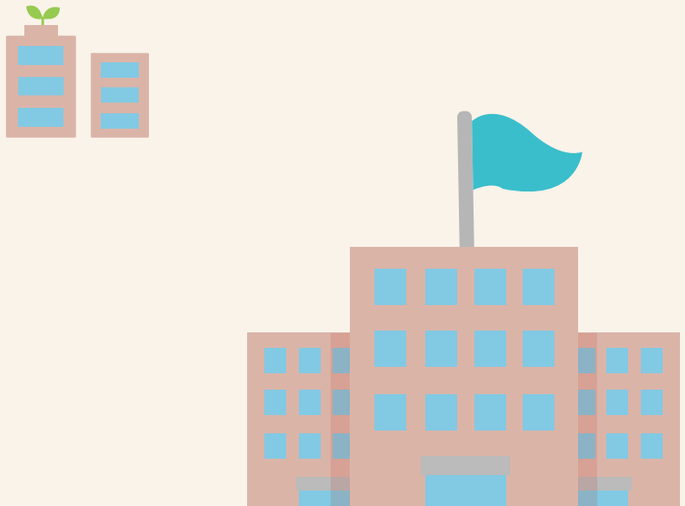

Chapter.5

#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CHILDCARE
SERVICE

## 01 특별활동 운영규정 위반시 제재가 있나요?

- '13.8월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 규정이 법에 마련되면서, 기존 수납 한도액 초과에 대한 처분규정 이외에,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록 영유아보육법 참고)

- 각 어린이집에서는 규정 미준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활동 관련 행정처분 기준

## 〈최초 적발시〉 법 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제29조제4항 및 제38조는 39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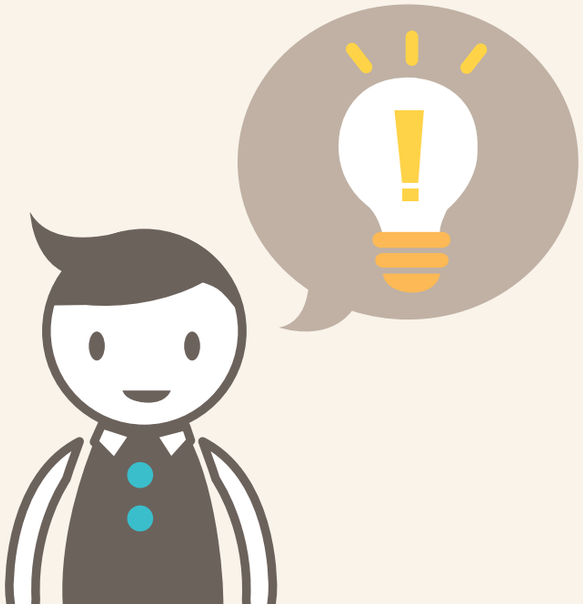

## 〈시정명령 미 이행시〉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따른 처분부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특별 활동 운영 관련 |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 |
| |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 |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대체 프로 그램 관련 |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비용 수납 관련 | 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초과하여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 |
| |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특별활동 관련규정만 발췌

# 부록

1. 특별활동 표준운영안
2. 영유아보육법상 관련규정

CHILDCARE
SERVICE

## 01 특별활동 표준운영안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13페이지 참고)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어린이집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설 어린이집이나 특별활동 운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있도록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 표준운영안'을 마련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당 평균비용** : 인건비, 교재비 포함하여 2만5천원 이하 (주 2회, 회당 30분 수업 기준)

2) **실시프로그램 수** : 총 프로그램 수 3개 이하

3) **연령별 프로그램 수** : (만 2세) 2개 이하, (만 3세 이상) 3개 이하

4) **활동 횟수, 시간** : 주 2회, 회당 30분 내외

5) **비용 환불기준 :** 특별활동 비용 수납 후, 미참여 시 환불조치 가능

– 업체와의 계약전에는 전액 환불, 계약이후에는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 동 표준운영안은 특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학부모, 전문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 • 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 계약 체결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 |
|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일할(日割)계산 |
|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일할(日割)계산 하여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 |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 – 교습개시 전 |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 – 교습개시 후<br>• 교습기간이 1월 이내<br>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br>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br>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br>•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br>• 미환급 | |
|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02 영유아보육법상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세부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운영 규정 관련 |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 |
| |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 |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비용 수납 관련 | 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 한도액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초과하여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 |
| |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특별활동 관련규정만 발췌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가이드 라인

CHILDCARE SERVICE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발행처** 보육정책과

**디자인** 디자인 세륜

**제 작** 세종 044) 863-5167 서울 02) 2273-5167

# 2014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 가이드 라인

CHILDCARE SERVICE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가가호호 아이돌셋
하하호호 희망한국